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-18호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0일

우정사업본부장

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

제1조(업무위탁 수수료)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

부 칙 <제2023-18호, 2023.04.10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KOREA POST 별정국·취급국담당/김민정/2023-04-10

[별표]

1. (대상국)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정(지방자치단체, 법인 제외)하며,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, 운영시간, 제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

2.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

대 상 업 무(유료우편물에 한함)	위탁 수수료
1) 국내·국제 접수우편물(통상·소포) 물량 합산	
가. 월 접수 1통부터 2,000통까지 해당 시	매월 260만 원 상당액
나. 월 접수 2,001통부터 3,000통까지 해당 시	위 가.항에 5만 원을 합산한 금액
다. 월 접수 3,001통 이상 해당 시	위 가.항에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
※ 월 지급 상한액	270만 원 초과분은 미지급
2) 우표류	
가. 월 접수 5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
나.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
다.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,0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1,000만 원 초과분부터	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

* 1)항 접수우편물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시,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  - 천재지변, 감염병 예방,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

3. 금융업무 위탁수수료

대 상 업 무	위탁 수수료
1) 우편환	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
가. 우편환 발행	우편환요금 수납액(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)의 100분의 80상당액
나. 우편환 지급	건당 100원
2)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	건당 90원
3) 수입인지 판매	4%(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)
4) 현금입출금기 등 설치에 따른 부대 업무 및 우체국예금·보험 기본 서비스 제공	매월 30만 원 상당액